

# 게임기를 이용한 포켓몬빵 등 판매 금지 안내문

## ◆ 인형뽑기 등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포켓몬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
\* 위반 시,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과태료 부과(500만원)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행정제재

### □ 정서저해 식품 개요

- (목적)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·가공·수입·유통·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
- (법적 근거)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9조(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등)
- (범위)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

#### ①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

- ②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(남녀의 애정행위 모양 포함)
- ③ 돈·화투·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을 용기·포장에 사용한 식품 등

### □ 판매 사례



### □ 참고 사항

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)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음식물 등 유통기한(소비기한)이 있는 물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(문화체육관광부 소관)  
\* 완구류 및 문구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 종류, 지급기준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